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퇴직효력 발생시기는 사표수리시 또는 사표수리 않할 때는 퇴직의 사표시 후 1개월 후 인지 여부

A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의 만료시라 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표를 받아들인 때, 사표를 수리한 때)라 할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로부터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민법 제660조 제2항)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 바,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사표를 제출한 후 적어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는 여전히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Q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A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은 일정 직급이상의 직원 중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자가운전보조비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이상의 직원이 자기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자가운전보조비가 비록 실제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여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매년 시제에 정기적으로 열어 온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甲종중은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종중의 종원 수인이 그러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결의가 유효한지요?

A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 사단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민법 제69조(통상총회)에서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에서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온 것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또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관례에 따라 정기 시제일에 행하여진 총회의 결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전기를 새로 쓰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는?

A 주택이나 상점 등을 신축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을 하셔야 하며, 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내선시공업체에서 신청을 대행하도록 맡기셔도 됩니다. 신청은 전기사용신청서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내선시공업체에서 작성한 내선설비시공내역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건축물이 필요치 않은 장소는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전기사용 신청시 비용과 전기공급 소요기간은?

A 주택 등의 내선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고객이 직접 선정하여 필요한 내선공사를 맡기셔야 하며, 이 경우 내선공사 비용은 고객이 내선시공업체에 별도로 지불하고 한전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 (신설거리 200m이내의 계약전력 5KW이하인 경우는 180,400원)는 한전의 공사비청구서에 의해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또는 한전 포천지점 창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주나 변압기를 신설하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명의변경 등 전기사용 변경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A 기존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청구서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용과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치 않으나 6KW이상 고객은 전기사용변경신청서와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소유주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산업용으로 변경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요금체납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에 재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고객부담금과 재공급 수수료 7,700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 한국전력 포천지점 고객지원과(☎539-023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1차 피해)

제 1차 피해의 두 번째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들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정신 심리적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는 비슷한 정도의 사고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개개인이 특정한 범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하겠다.

피해자의 제 1차적 반응, 즉 범죄의 직접적인 영향은 충격· 공포· 분노· 고립감 또는 죄책감 등이다. 이러한 반응 중 일부는 제 2단계의 반응으로 보다 구체화 될 수 있겠다.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제 2차적 반응은 제 1차적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컨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 생겨나는 분노의 감정이다. 그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고 형사사법기관을 비롯한 국가, 가족 심지어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기간을 지나면 심각한 혼란기가 도래하는데, 이 시기에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악몽과 의기소침, 죄책감, 자존심 상실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폭력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학교나 친구, 부모님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힌 후에 겪게 되는 각자의 상황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적 피해로는 불안, 공포, 분노, 무력감, 우울증, 수치심, 고립감, 배신감, 적개심, 복수심, 불면, 악몽, 환청, 사고와 관련된 해리나 왜곡된 사고에 빠지기 쉬우며 급성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기게 되며 신체적인 피해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산부인과 과장 **고영채**

임신 중 알아두면 좋을 일반 상식①

1) 운동 : 일반적으로 산모가 지나치게 피곤해 하거나 다칠 위험만 없으면 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단 임신전 운동량과 활동량에 맞춰서 임신중의 운동량을 정해야 한다.

임신성 고혈압이나 다태임신, 태아의 성장제한, 심한 심장 질환 등이 있는 산모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직업 활동 :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은 조산이나 태아 성장제한,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과거 저체중아를 분만한 병력이 있다면 육체적 활동을 조절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진통 시작 전까지 무리하지 않은 일은 가능하다.

3) 여행 : 비행기 탑승도 가능하나 분만예정일 7일 이내인 경우는 삼가해야 하고 마지막 달인 경우는 탑승전 산부인과 의사를 진찰을 받은 후 의사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비행기 탑승중에는 적어도 2시간마다 가볍게 걷도록 한다. 자동차 여행시에는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유사시에 보다 안전하다. 단 허리에만 두르는 안전벨트는 안 되고 어깨와 허리를 동시에 고정하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4) 목욕 :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으나 단지 목욕중에 미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의복 : 너무 조이지 않고 편한 옷을 입으면 된다. 다리를 너무 꽉 조이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6) 변비 : 임신시에는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되고 자궁과 태아에 의해 장이 눌려서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임신전에 변비가 없었다면 배변습관만 잘 조절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당한 운동, 프룬 쥬스(prune juice)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7) 충치 : 임신중 치료가 가능하다.

8) 성관계 : 예정일 4주전까지는 가능하나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삼가한다.

9) 흡연 : 조산이나 태아 성장제한, 태반 조기박리등으로 인한 저체중아 출산이나 미숙아 출산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금기이다.

10) 술 : 과거에는 임신중 약간의 술은 괜찮다고 한 적도 있었으나 임신중 음주는 절대 금기이다.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성장제한이나 안면기형,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포천병원(031-539-9114)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종**

Q 【법인의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이어야 함】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수 개의 법인을 관리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범위와 필요경비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세법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등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내용의 경우와 같이 "회장"은 비상근임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이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 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법인세법상 사장·부사장·대표이사 등과 함께 임원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낚시용품 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